

(붙임1)



2018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정택

목 차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 가. 총회(대의원회)
 -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4. 기타사업

III. 주요사업 추진 실적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18.02.02	65명	의안 제1호: 2017년 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안 제2호: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정관 변경(안) 의안 제3호: 비상임이사 선출(안)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01.17	15명	의안 제1호: 임원선거일 지정(안) 의안 제2호: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정관 변경(안)
01.25	15명	의안 제1호: 2017년 결산보고서 심의(안) 의안 제2호: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안) 의안 제3호: 2018년 이용고 배당대상 사업의 종류와 배점결정(안) 의안 제4호: 도림로지점 신축공사 계약(안) 의안 제5호: 조합원 자격심사 및 가입(안) 보고사항 1. 2017년 자금세탁 감사결과 및 이행현황보고서 보고사항 2. 영등포농협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
02.09	15명	의안 제1호: 조합원 자격심사 및 가입(안) 의안 제2호: 감사관련 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3호: 직원명예퇴직규정 제정(안)
02.23	15명	의안 제1호: 2018년 정원계획 변경(안) 보고사항: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보고
03.19	15명	의안 제1호: 조합원 가입 및 자격심사(안) 의안 제2호: 2017년 출하선급금 과태료 면제(안) 의안 제3호: 출하선급금 지급기준 결정(안) 의안 제4호: 우선출자매입 및 소각의 건(안) 의안 제5호: 인사, 리스크관리위원 선임(안) 의안 제6호: 2018년 사업계획 변경(안) 의안 제7호: 업무용 부동산 고정자산 취득(안) 보고사항: 상임이사 성과평가 결과보고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본점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94	02)831-0761
본점 하나로마트		02)847-0708
구로본지점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48	02)857-2090
구로본 하나로마트		02)857-2093
양평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10	02)2671-5301
가산디지털지점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151	02)869-8077
동작지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33	02)824-8580
당산역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9	02)2675-3762
남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90	02)854-0396
남구로 하나로마트		02)854-0376
문래동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9	02)2636-2682
신상도지점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31	02)3280-5621
신도림지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19-3	02)2635-4863
승실대역지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	02)814-8070
신대방삼거리역지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110	02)822-1401
신대방 하나로마트		02)822-1430
구일역지점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10길 27	02)869-9181
여의대방로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03	02)841-5800
여의대방 하나로마트		02)841-9800

나. 인원 현황

구분		기준일		
		17.12.31 (A)	18.03.31 (B)	증감 (B-A)
임원	조합장	1	1	-
	감사	2	2	-
	이사	11	11	-
	상임이사	1	1	-
	계	15	15	-
직원	지도경제	42	42	-
	신용	136	133	-3
	계	178	175	-3
임직원 합계		193	190	-3
조합원	조합원	634	645	11
	준조합원	82,476	83,359	883
조합원 합계		83,110	84,004	894

3. 정관변경 사항

1

농협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Ⅰ 조합원 제명사유 및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예외 사유 (§12)	○ 조합원 제명 사유 - 1년 이상 조합 사업 미이용 - 조합에 대한 의무 미이행 - 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 야기 등 - <신 설>	○ 조합원 제명 사유 - 1년 이상 조합 사업 미이용 - 조합에 대한 의무 미이행 - 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 야기 등 -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	
	○ <신 설>	○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조 합원의 제명 예외 사유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p><u>종사하는 자'의 자격기준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단,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u> (지역농협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u> - <u>다른 조합·조공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u> - <u>○○○○ 경우</u> (비고)제명 예외의 정당한 사유를 조합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 기재 	
<p>②약정조합원의 범위·교육 및 육성 계획 수립·시행 근거 규정 (§14의2)</p>	<p>○약정조합원의 <u>책임</u>,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위임</p> <p>○<신 설></p>	<p>○약정조합원의 <u>범위, 교육, 책임</u>,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위임</p> <p>○<u>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u> (우리농협은 미시행) (비고) 조합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단,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비율이 4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규정</p> <p>* '19년1월1일부터는 20%, '20년1월1일부터는 10%로 변경하여 적용</p>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p>자격요건 (§119) (품목§117)</p>	<p>등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 기관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 중앙회·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 및 은행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p>등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단, <u>우리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은 제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 기관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 중앙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금융업과 관련된 국가 기관 등 및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검사 대상기관</u>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p>6]조합의 경제사업 기준 (§138, 143) (품목§136, 141)</p>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 중앙회장이 조합의 <u>경영상태 평가결과</u>에 따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u>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u>하여야 하고, 매출액 등 <u>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u> ○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 중앙회장이 조합의 <u>경영상태 및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 평가결과</u>에 따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등 	
<p>7]조합의</p>	<p>○ 위탁사업 대상</p>	<p>○ 위탁사업 대상</p>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위탁사업 및 공동사업 대상(§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u>농협은행</u>, 다른 조합 ○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 대상 - 중앙회, <u>경제지주</u>, 다른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u>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u>, <u>농협은행</u>, 다른 조합 ○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 대상 - 중앙회, <u>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u>, 다른 조합 	
⑧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관련 (§5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 추진 대상 - 다른 조합, <u>중앙회</u> ○ 농산물 판매위탁 요청 대상 - <u>중앙회</u>, <u>경제지주</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 추진 대상 - 다른 조합, <u>중앙회</u>, <u>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u> ○ 농산물 판매위탁 요청 대상 - <u>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u> 	
⑨ 성년후견 제도 관련 용어 변경 (§11,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금치산선고</u> ○ <u>금치산자·한정치산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성년후견개시의 심판</u> ○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⑩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인정 사유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 설</u>> ○ <<u>신 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자격요건인 <u>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한 사유</u> - <u>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u> - <u>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의 살처분</u> - <u>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u> ○ <u>조합원 전부 또는 일부를</u>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 시 적용</u> ○ <u>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적용 불가</u> 	
11 우선출자 발행 제한 대상(\$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조합, 조공법인, 연합회,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조합, 조공법인, 연합회, 중앙회(<u>자회사 및 손자회사</u>) 	
12 조합원인 이·감사 선거운동 방법 등 (\$101의2) (품목\$99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보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보 - <u>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 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u> ○ <u>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 가능</u> ○ <u>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된 경우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가능하며, 관리·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u> ○ <u>정보가 삭제된 경우 게시자는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u> ○ <u>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u>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13 상임이사 자격요건 (§112) (품목§110)	○ 조합 등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 으로 5년 이상 종사 ○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 기관 등 또는 은행에서 상근직 으로 5년 이상 종사 등	○ 조합 등 및 중앙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서 상근직 으로 5년 이상 종사 ○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 기관 등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등	
14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가입 서류 (§10, 16)	○ 법인의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법인의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의 성명· <u>생년월일</u> ·주소	
15 기타 조문 정비 (§52)	○ 비상임 조합장 의무선출 규정 - 농협법 제45조제3항	○ 비상임 조합장 의무선출 규정 - 농협법 제45조제4항	

2

제도개선 사항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1 대의원 결격사유 (§46)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금치산자, <u>한정치산자</u>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자격 <u>상실·정지된 사람</u>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u>피성년후견인</u> , <u>피한정후견인</u>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삭 제>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p>② 임원의 정수 (§51)</p>	<p>○ 임원의 정수</p> <p>-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이사 중 9명은 조합원이어야 한다.</p>	<p>○ 임원의 정수</p> <p>- 조합장 : 1명</p> <p>- 상임이사 : 1명</p> <p>- 조합원인 이사 : 9명</p> <p>- 조합원이 아닌 이사 : 2명</p> <p>- 감사(상임감사 1명 포함) : 2명</p> <p>※ 상임감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p> <p>제6조(상임감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52조제8항 및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가 궐위 또는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p>	
<p>③ 조합장 선거 관련 규정 명확화 (§77의10Ⅱ, 77의14) (품목 §75의10Ⅱ, 75의14)</p>	<p>○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대상 행위</p> <p>-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p> <p>○ 사위투표 금지</p> <p>- 성명 사칭 등 그 밖의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할 수 없음</p>	<p>○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대상 행위</p> <p>-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제공의사표시·제공 약속 하는 행위</p> <p>○ 사위투표 금지</p> <p>- 성명 사칭 등 그 밖의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게 할 수 없음</p>	
<p>④ 조합원인 이사의 선거방법</p>	<p>○ 성별로 배분하여 선출 (비고)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경우</p>	<p>○ 성별로 배분하여 선출 (비고)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경우</p>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101) (품목§99)	- <신 설>	<p>로서 <u>성별로 배분하여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u></p> <p>○ <u>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선출 (우리농협 선거방법)</u></p> <p>(비고)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경우 <u>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u></p> <p>* 지역별 이사 배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리봉·가산동지역 : 1명 2. 구로본지역 : 1명 3. 남구로지역 : 1명 4. 신길지역 : 1명 5. 양평·문래지역 :1명 6. 동작지역 : 1명 7. 당산동지역 : 1명 8. 전 지역 : 2명 (여성1명) 9. 사외이사 : 2명 	
⑤대의원 자격제한 등 (§122) (품목§120)	<p>○대의원 자격</p> <p>- <u>대의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 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해당 선출 구역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u></p> <p>○경제사업 이용실적 기준</p> <p>- 경제(구·판매)사업 이용금액 (의무)</p>	<p>○대의원 자격</p> <p>- <u>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u></p> <p>○경제사업 이용실적 기준</p> <p>- 경제(구·판매)사업 이용금액 (의무)</p>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u><신 설></u>	<u>(조합이 출자한 조공법인의 판매사업 이용 금액 포함)</u>	
6 대의원 선거 방법 (§131) (품목§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기호 부여 방법 - 성명의 가,나,다 순 - <u><신 설></u> ○ 투표 시간 -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간 부터 종료시각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기호 부여 방법 - 성명의 가,나,다 순 - <u>후보자 간 추천(선택)</u> (비고) 후보자의 기호를 추천에 따른 기호 순에 의하는 경우 ○ 투표 시간 - <u>조합장</u>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7 운영의 공개 (§140의2) (품목 §138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운영조합에 한정) 게시 대상 - 3·6·9월말 사업보고서 - <u>정관 변경 사항</u> ○ 열람·사본 청구 대상 서류 - 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조합원 한정) - 정관 - 결산보고서 - <u><신 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운영조합에 한정) 게시 대상 - 3·6·9월말 사업보고서 - <u>정관</u> ○ 열람·사본 청구 대상 서류 - 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조합원 한정) - 정관 - 결산보고서 - <u>규약(조합원 한정)</u> 	
8 선거 구비서류 명확화 (별표 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동시조합장선거</u> 및 대의원선 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조합 장선거</u> 및 대의원 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되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병원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원 독감예방 접종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환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본인 사망 시에는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영농자재대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님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환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유통)사업

경제사업에서는 2018년 3월말 현재 69억원의 매출액 실적을 달성, 전년동기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트분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사무소별 신토불이 창구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2018년 사업계획 목표인 매출액 280억원의 달성과 수익성 개선을 통한 사업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경제사업의 확대를 위한 하나로마트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소비지농협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예수금 잔액은 2,152,25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53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상호금융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대비 175,247백만원 증가한 1,748,058백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여 예대비율 78.90%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업

비이자사업의 수익성을 증대하고자 사업추진한 결과 보험사업부문에서 9,744백만원으로 사업계획대비 36.77%를 달성하였으며, 스마트금융의 시대흐름에 따라 스마트뱅킹을 적극 추진하여 2,238좌 순증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이용액은 52,812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37백만원 순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지역농협을 선도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의원 및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8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28,077	6,967	24.81	7,126	-159	-2.23	
판 매							
구 매	60			42	-42	-100.0	
마 트	28,000	6,963	24.87	7,079	-116	-1.64	
가 공							
기 타	17	4	23.61	5	-1	-20.0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2,100,000	2,152,254	102.49	1,940,722	211,532	10.90
	평잔	2,063,352	2,072,445	100.44	1,886,423	186,022	9.86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1,680,000	1,748,058	104.05	1,572,811	175,247	11.14
	평잔	1,644,949	1,674,353	101.79	1,550,051	124,302	8.02
보험(공제)료	26,500	9,745	36.77	12,197	-2,452	-20.10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유동자산	21,850	유동부채	24,014
현금	12,404	외상매입금	314
외상매출금	278	단기차입금	0
재고, 생물자산	1,322	기타유동부채	23,700
기타유동자산	7,846	금융업예수금	2,152,254
금융업예치금	483,611	금융업차입금	464
금융업대출채권	1,697,200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0
(대손충당금)	51,482	비유동부채	3,354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0	장기차입금	1,973
비유동자산	83,382	기타비유동부채	1,381
투자자산	21,504	부채합계	2,180,086
유형자산	58,055	출자금	52,698
무형자산	0	자본잉여금	1,301
기타비유동자산	3,823	자본조정	-2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681
		이익잉여금	46,304
		자본합계	105,958
자산 총계	2,286,044	부채와자본 총계	2,286,044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3월말 (A)	'18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25,422	27,045	1,623
영업비용	16,041	17,481	1,440
매출총이익	9,381	9,564	183
신용사업	8,223	8,446	223
경제사업	1,158	718	-440
판매비와관리비	6,037	6,336	299
영업이익	3,344	3,228	-116
교육지원사업비	74	65	-9
영업외손익	427	523	96
법인세차감전손익	3,697	3,686	-11
법인세비용	0	0	0
당기순이익	3,697	3,686	-11